제133회 제2차 정례회 광 진 구 의 회

# 서울특별시 광진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12. 21.

복지건설위원회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782

> 2009. 12. 21. 복지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 8. 3. 추 윤 구 의원 외 4 인

나. 회부일자 : 2009. 11. 25.

다. 상정일자 : 2009. 12. 21.

# 2. 제안설명

가. 제안설명자 : 추윤구 의원

#### 나. 제정사유

- 1)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추세와 아울러 사회경제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노인층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도시화와 함께 나타난 핵가족화는 친족관계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기피하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음.
- 2) 이는 전통적인 효에 대한 관념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변화하는 우리 사회가 부모 부양에 대한 환경을 마련해 주지 못함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3) 이에「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의 복원 및 효 문화의 사회적 확산으로, 효 의식을 되살리고 정착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3세대 효도가정" 및 "효도수당"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3) 지원대상은 효도대상자가 광진구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3세대 가정으로 함. (안 제3조)
- 4)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0,000원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
- 5) 신청자가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각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구청장은 동장의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함. (안 제5조)
- 6) 구청장은 효도수당의 중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함. (안 제6조)

#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사회적인 무관심속에서 우리 전통문화인 효에 대한 관심을 자녀들에게 알리고자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서 효행을 통한 건전한 가족의 정착과 효문화를 확산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조례구성은

○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7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 내용으로는

•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규정을 두었고,

-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효도대상 가정으로 광진구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효도가정의 지급대상과 지급시기에 관한 내용을, 또한 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었고,
- · 제5조에서는 효도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 동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로 계좌입금하는 내용과,
- 제6조는 효도수당 지급중지와 관련하여 광진구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때, 3세대 효도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때 지급을 중지하는 사항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환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 제7조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3호서식에 따른 신고를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 제8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부칙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 전통문화 유산인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함양을 위하여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 수당을 지급함으로서 효행을 통한 건전한 가족의 확산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 정한 80세 이상 3세대 이상 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나,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조례로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질의 및 답변
- 없음
- 5. 토 론
  - 반대토론 : 없음
  - 찬성토론 : 없음
- 6. 심사결과
  - 재석위원 6인중 6인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